

【고 시】

- 정선군 고시 제2020-261호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 수도공급설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.....2
- 정선군 고시 제2020-264호 정선(신동)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 실시계획인가 고시.....4
- 정선군 고시 제2020-265호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.....6
- 정선군 고시 제2020-268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.....8

【공 고】

- 정선군 공고 제2020-1252호 정선(임계) 군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공람·공고.....9
- 정선군 공고 제2020-1290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.....11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실 (전화:560-2213, FAX:560-2592)

고 시

정선군 고시 제2020-261호

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 수도공급설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1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 수도공급설비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결정(변경) 하고,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강원도 사무 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 및 상하수도 사업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0년 11월 20일

정 선 군 수

가. 결정(변경)취지 : 신동읍 고성리 139번지 일원 군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 결정을 통해 지역 내 급수지역 확장 및 양질의 용수공급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위 치 :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139번지 일원

다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 수도공급설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

가) 비도시지역

1) 유통 및 공급시설

- 수도공급설비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 설 명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16	신동통합정수장	신동읍 고성리 139번지 일원	-	증) 11,755	11,755	금 회	

- 수도공급설비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 설 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6	신동통합정수장	- 신설 - A : 11,755㎡	지역 내 급수지역 확장 및 양질의 용수공급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선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신동통합정수장 신설

라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 수도공급설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지도 :
실음생략

정선군 고시 제2020-264호

정선(신동)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 실시계획인가 고시

정선군 고시 제2019-251호(2019. 12. 06)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(신동)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20일

정 선 군 수

가. 위 치 :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63-11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종 류 : 정선(신동)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
- 2) 명 칭 : 정선(신동)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 조성사업(야구장)

다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시설명	군계획결정		실시계획인가	비 고
	세부시설명	면적(㎡)	금회 시행	
체육시설	야구장	25,387㎡	■ 야구장 조성 A=13,458㎡	

라. 사업시행자 및 주소

- 1) 성 명 : 정선군수(문화관광과)
- 2) 주 소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17

마. 사업기간

- 1) 착 수 일 : 실시계획인가일
- 2) 준공예정일 : 2021. 3. 31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 : 붙임

사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● 토지조서

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대장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이해관계인		
					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	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
1	신동읍 조동리	260-5	학	4,046	3,939		정선군	-	-	-
2	신동읍 조동리	260	전	542	59		정선군	-	-	-
3	신동읍 조동리	산97-5	천	20,422	146		국 (건설부)	-	-	-
4	신동읍 조동리	산97-2	철	4,364	113		국 (국토교통부)	-	-	-
5	신동읍 조동리	263-8	철	56	47		국 (국토교통부)	-	-	-
6	신동읍 조동리	산95-1	철	198	112		국 (국토교통부)	-	-	-
7	신동읍 조동리	263-9	철	92	47		국 (국토교통부)	-	-	-
8	신동읍 조동리	263-11	학	16,397	8,659		정선군	-	-	-
9	신동읍 조동리	263-77	철	382	256		정선군	-	-	-
10	신동읍 조동리	263-7	철	1,066	80		국 (국토교통부)	-	-	-
계		10필지		47,565.0	13,458.0					

정선군 고시 제2020-265호

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

1. 정선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소로2-14호선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,
2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0년 11월 27일

정 선 군 수

가. 결정(변경) 취지 : 기 변경(결정)된 군계획시설(소로2-14호선)에 대하여, 애산리 55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(공동주택)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일부구간 확폭에 따른 변경을 하고자 함.

나. 위 치 : 강원도 정선군 애산리 592-11번지 일원

다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가) 정선도시지역

1) 교통시설

- 도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2	14	8	국지 도로	256	중로1-3 애산리 432-358도	애산리 592-11제	일반 도로	약초 시장	정선고제41호 (03.5.9)	
변경	소로	2	14	8~10	국지 도로	256	중로1-3 애산리 432-358도	애산리 592-11제	일반 도로	약초 시장		일부폭원 변경

- 도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

변경 전 도로명	변경 후 도로명	변경 내 용	변 경 사 유
소로 2-14	소로 2-14	· 도로 일부구간 폭원 변경 개설 - 폭원 : 8m → 8m~10m - 면적 : 2,047㎡ → 2,143㎡ 증)96㎡	· 애산리 공동주택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일부구간 폭원 변경

라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지도 : 실음생략

정선군 고시 제2020-268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의 멸실로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24일

정 선 군 수

○ 도로명주소 폐지

연번	도로명주소	폐 지 일	폐지사유	비 고 (관련지번)
1	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45-3	2020.11.24.	건물 멸실	고한읍 고한리 120
2	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45-4	2020.11.24.	건물 멸실	고한읍 고한리 120
3	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47-1	2020.11.24.	건물 멸실	고한읍 고한리 120-98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민원과(☎560-2176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공 고

정선군 공고 제2020-1252호

정선(임계) 군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공람·공고

1. 정선군 고시 제2010-96호(2010. 7. 09)로 최초 결정된 정선(임계) 군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 인가에 따른 공람·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
2.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11월 20일

정 선 군 수

가. 위 치 :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179-6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종 류 : 정선(임계) 군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 공사(임계 정수장)
- 2) 명 칭 : 정선(임계) 군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 시설개선 공사(임계 정수장)

다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시설명	군계획결정		실시계획인가	비고
	세부시설명	면 적(m ²)	금회 시행(증설)	
수도공급설비	임계정수장	A=5,570m ²	■ 침 전 지 : B3.0m×L23.0m×H4.0m×2지 ■ 완속여과지 : B8.0m×L12.0m×3지 ■ 정배 수 지 : Ø8.3m×H4.2m(250m³ STS원형) ■ 가압펌프장 : W2.0m×L2.0m×H2.5m(1,500m³/일)	

라. 사업시행자 및 주소

- 1) 성 명 : 정선군수(상하수도사업소)
- 2) 주 소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(정선로 1047)

마. 사업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22. 12. 31.

바. 공람기간 : 게재일로부터 14일(2020. 11. 20 ~ 2020. 12. 04.)

사. 공람장소 : 정선군 도시과 및 상하수도사업소(☎033-560-2132, 2519)

아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 : 붙임

자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● 토지조서

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대장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이해관계인		
					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	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
1	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	179-6	전	4,449	4,311	정선읍 봉양3길 21	정선군	-	-	-
2	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	179-20	전	1,952	1,042	정선읍 봉양3길 21	정선군	-	-	-
3	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	231-4	답	151	87	정선읍 봉양3길 21	정선군	-	-	-
4	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	227	도	582	123	정선읍 봉양3길 21	정선군	-	-	-
5	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	179-17	전	3,426	7	인천시 부평구 삼산동	박*범	-	-	-
계		5필지			5,570					

정선군 공고 제2020-1290호

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

「정선군 수도급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

2020년 11월 30일

정 선 군 수

1. 개정이유

중앙위원회의 규제 및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군민 편익을 도모하고,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.

- 「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」
 - 공정거래위원회(2019.10.25.)
- 「공동주택관리비 등 생활 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제도개선 권고」
 - 국민권익위원회(2016.7.8)
- 「제도개선 권고」
 - 국민권익위원회(2019.5.14)

2. 주요내용

- 경쟁제한적 조문 수정(안 제8조 제2항)
 - (기존)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자재 사용원칙
 - (변경) 수도법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 사용
- 수도요금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 도입(안 제36조 제4항)
 - (기존)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3/100 가산금 부과
 - (변경) 3/100 가산금 부과하되, 1개월 미만은 일할계산.
- 소멸시효 조문 수정(안 제51조2)
 - (기존) 과오납된 수도요금 반환에 대한 소멸시효 명문화 없음.
 - (변경) 과오납된 수도요금 반환에 따른 소멸시효 5년으로 명문화.

3. 개정 조례안 : 붙임

4. 입법예고 : 2020.12.1. ~ 12.20

5. 의견제출

이 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0일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(상하수도사업소장)에게 제
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○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※ 의견 제출 및 문의처

- 주소 : (우 26132)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, 정선군상하수도사업소

- 전화 : 033-560-2521

- 팩스 : 033-560-2109
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jeongseon.go.kr/portal/openadmin/adminnews/legislativenotice>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 치 법 규 명 :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 조례(안)

☐ 의 건 제 출 자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연 락 처:

개 정 안	찬성여부		의 건	비고
	찬성	반대		

정선군 조례 제 호

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

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제품은 「수도법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제3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.
1.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: 미납요금 $\times$ (3/100) $\times$ (체납일수/월력일수)
 2.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: 체납액의 3/100

제51조의2 중 “다만,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”을 “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 및 과오납된 수도요금 반환에 대하여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공사의 시행) ① (생략)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<u>자재는 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.</u> ③ ~ ⑤ (생략)	제8조(공사의 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자재 및 제품은 「수도법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</u>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36조(가산금 등) ① 삭제(2018.11.12.) ② 삭제(2018.11.12.) ③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우편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그발송일을 납부일로 본다.	제36조(가산금 등)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<u>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.</u> <u>1.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: 미납요금× (3/100) ×(체납일수/월력일수)</u> <u>2.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: 체납액의 3/100</u>

현행	개정안
제51조의2(소멸시효)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「민법」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. <u>다만,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.</u>	제51조의2(소멸시효) ----- ----- ----- - <u>다만,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, 과오납된 수도요금 반환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」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.</u>

관 계 법 령

□ 수도법

제14조(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) ① ~ ② 생략

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,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~ ⑧ 생략

제38조(공급규정)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,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,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, 2011. 7. 28>